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 2. 수도 : 룩셈부르크(Luxembourg, 115,227명 2016년) 3. 인구·면적 : 576,249명(2016년), 2,586㎢(제주도의 약 1.4배) 4. 공용어 :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5. 1인당 GDP : 111,716불(2014년) 6. 독립일 : 1839년(네덜란드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내각책임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2. 연혁

○ 1996. 7. 12.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7.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

○ 소장과 부소장 및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총 9인)

○ 최고재판소장(Pr?sident de la Cour sup?rieure de justice) 1명, 행정법원장(Pr?sident de la Cour administrative) 1명,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법관 2명, 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공통의견을 토대로 하여 대공령(大公領)에 의해 임명되는 5명의 재판관(conseiller)으로 구성(헌법 제95조의 3)

○ 최고재판소의 장이 헌법재판소장이며, 행정법원의 장이 헌법재판소

부소장임(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조) : 본연의 업무와 겸직가능, 본연의 업무의 일시적인 혹은 종국적인 직무정지는 헌법재판소 업무의 직무정지를 야기함.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권한을 대행함.

○ 사건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주심재판관을 포함하여 5인의 재판관으로 지정재판부(Chamber)를 구성. 단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모든 심리에 참석 가능

○ 헌법재판소장은 각 사건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고, 주심재판관(conseiller-rapporteur)을 지명할 수 있음

○ 주심재판관은 임명 순에 기초한 위계서열을 존중하여 임명

○ 최고재판소의 서기(greffe)가 헌법재판소의 서기 역할을 함

4. 권한

○ 각급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 국제조약에 대한 동의법률은 위헌제청 대상법률에서 제외

5. 심리 및 결정

○ 최고사법법원 혹은 최고행정법원이 일반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받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함. 그러나 제청 받은 사건이 결정할 필요 없는 경우, 이유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필요 없음.

○ 사건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소송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변론을 실시하여 주심재판관의 보고 및 소송 당사

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신, 부모 혹은 친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심의, 주재 및 결정할 수 없음

○ 평의(d?lib?ration)는 비공개이고, 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짐

○ 헌법재판소 소송비용은 무료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포됨

6. 연락처

○ 주　　소 : Cit? judiciaire
B?timent CR
L-2080 - Luxembourg
T?l. : (+352) 475981 - 368

○ 전화번호 : (+352) 475981 - 1

○ 홈페이지 :

http://www.justice.public.lu/fr/organisation-justice/cour-constitutionnelle

※ 출처 :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사이트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조직에 관한 1979년 7월 27일 법
(2016. 6. 작성)